

자체평가규정

제정 2010. 9. 30
 개정 2010. 11. 15
 개정 2012. 3. 1
 개정 2017. 3. 1.
 개정 2018. 2. 28.
 개정 2018. 10. 22.
 개정 2021. 10.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학칙 제16장에 준하여 본교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자체평가는 본교가 대학 자체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영역)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특성화대학 위상 확립
2. 학생역량강화
3. 교수,교직원 경쟁력 강화
4. 교육과정 경쟁력 강화
5. 교육품질관리 및 책무성 강화
6. 행·재정적 지원 및 교육시설과 설비

제4조(평가시기 및 절차) ① 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평가는 평가계획수립, 평가실시, 평가결과 공개의 절차로 진행된다.

제5조(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 ① 자체평가의 결과는 교내 언론매체,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결과는 장단기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연구의 질 제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자체평가위원회

제6조(자체평가총괄위원회) ① 원활한 평가 수행을 위하여 자체평가총괄위원회(이하 “총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교무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총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위원장은 자체평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평가 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지표와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지표 실적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① 총장은 자체평가의 기획 및 운영을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지표개발
2. 자체평가 계획과 평가 실시
3.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4. 자체평가 결과 분석 바탕으로 각 단위 컨설팅 기능 제공
5. 평가위원회와 총장에게 자체평가 결과 보고
6. 그 밖에 자체평가연구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타)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체평가총괄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